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옥재은 의원 외 63명
- 나. 의안번호: 제647호
- 다. 발의일자: 2023. 3. 29.
- 라. 회부일자: 2023. 4. 3.

2. 제 안 사 유

- 2015년 파리 기후협약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새 정부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차 등의 고부가 소재·부품 핵심기술 자립을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따라서 서울시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수소산업의 연구,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나.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수소산업 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 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의3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별제한법」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소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8조의2	· 수소 전문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 ·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안 제8조의3	· 수소 전문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또는 매각

나. 검토의견

- 안 제8조2제1항은 시장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 전문기업에 「조세 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수소 산업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시 수소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 부담 완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별 조례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재량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의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하는바,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제2항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역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으로, 타 조례의 경감 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8조의3은 시장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소 전문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안 제8조의3과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8조의3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체계나 입법경제 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 그에 맞추어 적시에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입법 형태로 판단됨.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한편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는 수소 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과 공유재산 매각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안 제8조는 기업, 연구기관 등이 수소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